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관련

- 가. 방송법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
- 나. 방송법 제98조(자료제출)
- 다.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의3(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등)
- 라.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자료제출)

2. 방송법 제69조의2 등에 따라 「202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자료 제출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가. 제출기한 : 2023. 3. 31.(금)
- 나. 제출방법 : 전자우편 제출(mediadiversity@korea.kr)
- 다. 제출내용 : 붙임 참조

3.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자료 제출 안내(붙임1)」와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자료 제출 양식(붙임2)」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kc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공지제목 : 202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자료 제출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자료 제출 안내 1부.
2.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자료 제출 양식 1부. 끝.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수신자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주무관 허셋별 방송통신사무관 정세민 미디어다양성정책과 과장 장대호 전결 2023. 2. 15.

협조자

시행 미디어다양성정책과-140 (2023. 2. 15.) 접수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방송통신위원회 / www.kcc.go.kr

전화번호 02-2110-1464 팩스번호 02-2110-0148 / hsbyeol@korea.kr / 비공개(5)

국민이 주인인 정부